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모집공고(조합원 취소분)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2.05.1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기간내 소유권이전등기시 해제)	없음	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4.05.10.(금)	-	2024.05.20.(월)	2024.05.21.(화)	2024.05.22.(수)	2024.05.28.(화)	24.05.29.(수)~ 24.06.04.(화)	24.06.10.(월)~ 24.06.12.(수)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은 **2023.08.30.** 사용승인된 아파트입니다.
- 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하며,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등 추가 시설물설치,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nebailey.seoul.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1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2.05.10.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024.05.20.(월)	2024.05.21.(화)	2024.05.23.(수)	2024.05.28.(화)	24.05.29.(수)~ 24.06.04.(화)	24.06.10.(월)~ 24.06.12.(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4, 금정빌딩 703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에 의한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별표 3]에 따라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자금 증빙자료,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기간내 소유권이전등기시 해제)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7929호(2024.05.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5층 23개동 총 2,990세대 중 조합원 최소수량 1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7월 예정(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후 잔금 완납 이후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m²)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4000174	01	084.9500D	84D	84.9500	26.8420	111.7920	98.7175	210.5095	37.5969	1
				합 계						1

-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이에 따라 세대별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동·호수	세대수	공급금액			필수 옵션금액			최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소계	발코니확장비	유상옵션	소계		계약시	2024.07.26
084.9500D	84D	117동 102호	1	1,445,440,000	471,515,000	1,916,955,000	9,933,000	29,500,000	39,433,000	1,956,388,000	195,638,800	1,760,749,2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심사결과에 따른 택지비와 건축비 총액 내에서 동별, 층별, 면적별로 차이를 둔 것입니다.

※ 총 계약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완료, 유상옵션 설치완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공급금액 외에 필수옵션금액으로 구분하였으며, 필수옵션금액을 포함하여 최종공급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자는 최종공급금액에서 필수옵션의 제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치된 유상옵션 품목	가격(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무풍형),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빌트인 전기오븐, 현관중문, 워크인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 침실 불박이장, 대리석, 주방가구 엔지니어드 스톤, 외산 수전(한스그로헤), 조명 고급화, 드럼세탁기, 전기건조기, 주방렌지후드, 현관 진공청소기, 화장대, 욕도 엔지니어드 스톤데크, 마루, 주방식탁 벽면마감, 주방전원 인프라, 가구조명	29,50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해당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의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입니다.(2023.08.30.)
- 본 주택은 2023.08.30. 사용승인 인가되어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후 잔금 납부 이후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역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배분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상기 최종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진행시 모든 제출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것을 말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사본불가)
- 동일 주택형(m²)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사용승인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아파트로 견본주택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청약 전 내·외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감재, 외부 색채 등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나 변경요구 할 수 없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22.05.1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p>※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15 767 2069 935">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자)</p> <p>■ ②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data-bbox="315 1331 2101 1402">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투기과열지구 70%</td> <td>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315 1469 2101 1509">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70%	3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투기과열지구 70%	3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주택소유여부 및</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p>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규제지역)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2순위	2024.05.22.(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기간 : 2024.05.28.(화) ~ 2024.06.06.(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4.05.2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4.05.28.(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일반공급	2024.05.29.(수) ~ 2024.06.04.(화) 09: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4, 금정빌딩 703호) ※ 구비 서류 등 지참 방문
예비입주자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공급 일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위 제출서류 목록의 공통서류(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으로 고지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및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주체 사무실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무주택서약서	본인	• 사업주체 사무실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사업주체 사무실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서류발급일까지로 설정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전자수입인지(중이문서용)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세대의 아파트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아파트에 대한 인지세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인지세는 시공사와 수분양자간 각각 1/2씩 인지세 부담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추가선택품목 금액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전세 사기 피해자	○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임차주택, 사본제출 매각허가결정서(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 사본 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피해자 낙찰주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낙찰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채권가 확인서류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체류 (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의 연수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 포함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가점제 추가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부양가족 산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부양가족 산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부적격		○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통보를 받은 자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공통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사무실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서명 또는 도장
<p>※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0.)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p> <p>※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p> <p>※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p> <p>※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p> <p>※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p>■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p> <p>-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p>		
구분	계약기간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2024.06.10.(월) ~ 2024.06.12.(수) 10:00 ~ 16:00	• 사업주체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4, 금정빌딩 703호)
<p>■ 최종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p>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및 잔금	KEB하나은행	366-910005-14904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17동 102호 홍길동 : 1170102홍길동)
-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후 잔금 납부 이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지정된 기간에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납부일 이전에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납부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증(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 생략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사무실 비치 •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주택취급자득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수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세대의 아파트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아파트에 대한 인지세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인지세는 시공사와 수분양자간 각각 1/2씩 인지세 부담 (아파트 공급대금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추가선택품목 금액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금액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자격 확인서류 일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		인감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사무실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서명 또는 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Ⅷ 참고사항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①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 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②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 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 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사업주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사무실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소형·저가주택 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3호 및 [별표1]제1호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이 수도권 1억6천만원(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분양가측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분양가측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는 사용승인 후 분양하는 아파트로 특정 일자를 선정하지 않고 계약 후 해당 세대 고객의 일정에 맞춰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 전 사업주체 사무실과 일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전 점검은 입주 1개월 이전에 진행 되어야 입주 전 하자보수가 원활하게 진행 됩니다.
- 사전점검 가능일시 : 주중, 주말, 공휴일 : 10:00~17:00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일 통보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시기 : 2024년 7월 예정(사용승인 완료로 계약 후 계약금, 잔금 완납 시 입주가능)

■ 본 주택은 2023년 08월 30일 사용승인 완료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급히 공급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첨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이에 전매가 금지되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하며,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등 추가 시설물설치,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나, 본 주택은 사용승인(2023.08.30.)된 아파트로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	(주)세정이에프씨
감리금액	14,384,900,000	1,506,150,455	2,270,000,000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단위 : 원)

항목	내용	금액
1. 택지비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택지비	256,611,805,991
2. 직접공사비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28,122,824,395
3. 간접공사비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11,005,389,147
4. 설계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1,275,342,547
5. 감리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482,562,045
6. 부대비	주택건설공사에 소용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3,653,684,053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5,002,143,790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기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5항)

(단위 : 원)

구분	대화감정평가법인	예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	232,940,780,840	235,989,743,940

■ 시행사(사업주체) 및 시공사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삼성물산(주)
법인등록번호 : 110171-0081890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5762

IX 단지 여건 등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 본 주택 당첨 후 공급계약 체결시 2023.08.30.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도면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일부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 루버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무관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및 옥상정원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단지내 (공용)보도는 준공이후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 본 단지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는 택지 구분 없이 계획 되었으며 단지내 모든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로당, 지하주차장, 옥상정원 등)은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공동 사용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사업주체'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영유아 보육법 개정('18.12.24 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영유아보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시행여부 및 운영여부를 결정 예정임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p>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공장제작 제품 특성상 동일 회차 생산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미세한 이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며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모든 천연자재의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표면무늬가 일정하지 않음. 특히 원목마루 및 천연 무늬목 등은 동일 수종이라 하여도 천연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이 일정하지 않고 웅이 및 워터라인이 있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음. 천연석의 경우 패턴과 색상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석재별로 균열의 흔적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바람 · 아트월 및 벽체에 부착된 타일 및 석재는 시공법에 따라 골조벽체와 떠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T.V 설치 등 입주자 필요에 의한 임의타공 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생활지원센터에 주의사항을 확인바람
<p>■ 설계관련 사항</p>	
<p>구분</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의 변경이 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전체 공용면적을 합산 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함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동간거리를 확보했으나,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세대에 테라스 또는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세대의 사용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사용범위는 최종 인허가 도면에 따름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주관하되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임대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상가의 대지는 공동주택의 대지와 별도로 구획됨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현장여건상 동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에서 운영방식을 결정함
- 일부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코니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 또는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 정해진 경계범위 외부는 사용할 수 없음
- 빗물 저류조 관리층,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바닥면적 / 건축면적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 또는 구조물의 지붕공간이 제공되는 세대들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진입이 필요할 경우 개방하여야 함

■ 단지관련 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세대에 테라스 등으로 제공되는 공간 외의 데크상부, 건물 옥상 등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세대 및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경우 관리자에게 협조하여야 함 · 단지 주변에는 각종 시설[공원, 근생, 종교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로, 학교,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추후 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직·간접적인 피해(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 · 올림픽대로측 방음 시설의 형태 및 종류, 기존방음벽의 철거범위 등은 대관 협의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주변 도로소음에 대해 서울 시설공단, 서울시도로시설과, 서울시도로관리과 등의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허가 득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헤스티아 라운지 등)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입주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음식물쓰레기투입구는 보조주방 또는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창고는 지하층에 설치되며, 타입별로 크기 및 형태, 위치, 층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습기로 인한 보관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 선착순으로 배정되고 있음 · 올림픽대로측 경로당-1주변에는 방음벽으로, 이에 따른 조망, 환기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123동(인근동 포함)]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변에는 어린이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광장, 상가, 드롭존, 옥외 출입구 등이 설치되며,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상가, 승강기, 계단실, 옥상구조물, 옹벽, 방음벽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인접동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정화조, 사우나, 수영장, 주민공동시설,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열교환실, MDF 실, 쓰레기 집적소 등), 공공보행통로의 배기구, 환기구 및 배기연도 등이 설치되어, 수증기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는 지하시설의 급배기구,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중간펌프실, 쓰레기집적소 등이 계획되어 소음, 진동, 냄새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진출입 램프, 비상차로 포함)와 산책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가로등, 야간 조명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는 동은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가 동 인근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 실외기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상가 지붕에는 옥상조경, 박공지붕구조물, 지붕장식구조물 등이 설치되며, 해당 동 및 주변동[101동, 106동, 108동, 109동, 113동, 114동, 115동, 116동, 117동, 118동, 119동, 123동 등]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외부 지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옹벽, 석축, 자연경사면 등이 설치됨 · 승강기 대수 및 인승, 속도는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치됨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됨 · 문주 설치로 주변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모든 부대복리시설, 공공보행통로, 상가 등의 주변에는 실외기 또는 공조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다음동의 일부층에 공중정원, 스카이라이프, 북카페 등이 설치되어 인근세대(상하부층 포함)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8동, 109동, 112동, 114동, 115동, 116동, 117동, 118동, 119동, 120동, 121동, 122동, 123동] · 올림픽대로변 기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동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별 엘리베이터는 세대수에 따라 설치 대수가 상이함 - 117동 코아는 17인승 승강기 2대 설치됨 · 전체 세대는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입주 및 이사시 승강기를 활용하여야 함 · 105동, 106동, 107동, 109동, 110동, 111동, 116동, 117동, 118동은 분양(일반, 조합)세대와 재건축소형주택이 같은 동에 계획됨 ·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되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상세계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라 세대 내 빛 반사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이동통신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옥상구조물 측면에는 줄눈이 설치되지 않음 · 지하층 PIT 중 일부 또는 PIT 전체의 천장 및 바닥, 벽체 마감은 미 시공됨 · 다음 동 주변에는 음식물쓰레기 옥외 투입구는 총 6개소 설치되어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104동, 106동, 107동, 109동, 110동, 112동, 116동, 118동, 119동, 120동, 121동 (인근동 포함)] · 108동, 109동, 110동, 112동 (지하2층) 인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옥상에는 통기배관이 설치되며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1층 필로티에는 제연환풍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냄새,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옥상에 비상용 소화수조가 설치됨 · 109동에 카페테리아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지하2층), 108동(지하4층), 109동(지하4층) 인근에는 부대복리시설용 공조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입면 돌출 장식물, 옥탑장식물에 의해 일부 채광 및 조망 시 장애가 될 수 있음 · 전파수신 상황을 고려하여 103동 옥상에 TV 공시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1동, 103동, 105동, 112동, 115동, 117동, 119동, 121동 옥상에는 이동통신용 안테나가 설치되며 지하주차장에도 별도의 중계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 입면 디자인을 위해 경관조명, 입면변화, 돌출 구조물 및 커튼월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주변 세대의 야간 빛 간섭, 주간 채광 간섭, 햇빛 반사 및 우수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접근거리 및 지하주차장을 통한 접근여부 등이 동별로 상이함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음식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의 일부는 PC 구조로 시공되어 있으며, 부재의 크기, 형태, 특성 등은 부위별로 차이가 발생함 · 주차대수 : 5,460대 (전기차 충전공간 72개소 포함) · 외기에 면한 주차장 벽체 마감은 블록공간 쌓기 및 건식판넬로 시공됨 · 지하 2층에 무인택배함이 동별 1개소 설치 됨 · 주차유도시스템은 지하 1,2,3,4층에 설치 됨 · 지하2층 주차장은 택배차량, 청소차량 등의 접근을 고려하여 차량동선의 유효높이는 3.3m로 시공됨 · 지하주차장이 PC로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은 별도 마감을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에는 수경시설(생태연못, 인공형 수경시설 등)이 설치되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인접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음
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되어있으며, 지하주차장 등은 별도로 사용하는 시설임 · 상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점상가의 업종에 따라 음식 조리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의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관련 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벽체두께, 창호크기, 발코니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건식벽체 접합부 등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균열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발생함 · 세대내 안목치수 산정 시 옵션마감재,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은 포함되지 않음 (기본형 평면으로 적용) · 세대내 우물천장 크기, 높이, 형태, 조명 등은 타입별로 상이함 · 세대 내 건식벽체 석고보드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함 · 상부세대 욕실배관이 하부세대 욕실 천장속에 설치되며, 상부세대 욕실배관 보수 시 하부세대는 협조하여야 함 · 단위세대 침실이 승강로에 면하는 경우 승강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호수에 따라 평면이 좌우대칭 되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아트월, 소파 설치위치, 외부조망 등이 변경 됨 · 욕실 출입구 단차는 배수를 위한 바닥구배 시공으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고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조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불박이 가구 및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과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인테리어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특히 주방가구(하부장,아일랜드장 하부), 샤워부스가 설치되는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천장면에 설치되는 전등 등의 위치 및 개소는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같은 타입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 및 층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과 마감재의 치수, 디테일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에서 측세대 /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관련법규에 따른 벽체 기준면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가전의 대형화에 따라 분양이후에 출시되는 신규 전자제품은 주방가구 및 발코니 등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침실벽체, 욕실벽체 등 내부벽체는 콘크리트 또는 건식벽체로 시공됨 (세탁실, PD 벽체 포함) · 단위세대간 벽체는 공사용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중 일부 오픈될 수 있으며, 준공 전 골조,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막음 · 침실문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됨 · 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내부 구성, 불박이장의 위치, 구성, 크기가 상이함 (불박이장 위치는 같은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코너선반, 약세서리 제공 여부, 키큰장 사이즈, 하드웨어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가구 측면이 가열대와 인접시 방열판이 설치될 수 있음 · 평면구조에 따라 아트월 설치 위치 및 길이, 시공디테일, 천장 간접등의 설치 위치 및 길이는 상이함 · 단위세대 내에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시 실측치수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p>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는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에 의해 오픈 발코니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형태, 면적은 같은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기준층과 천장고가 상이하며 발코니 천장 높이는 타입/세대별 상이함
발코니/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 (일부 대 피공간이 설치된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미설치됨) · 외부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 외벽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됨(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음) ·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 시 창호 개폐 및 채광이 어려울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은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해당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수전이 계획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음 · 오픈 발코니의 유무, 평면구조, 배관간섭여부 등에 따라 커텐박스 높이 및 크기는 실별 상이할 수 있음 · 오픈 발코니는 외부 사시를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법규에 따라 각 세대에는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1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의 경우는 미설치됨) · 아파트 단위세대 내 가스입상배관은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 실외기실에는 가스입상배관 신축이음이 설치될 수 있음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창호는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디자인과 사양이 상이함 · 같은 타입의 세대일지라도 동선 및 호별에 따라 현관문의 열림방향이 다름 · 엘리베이터홀 창 중 층당 1개소는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로 설치되고, 창호가 2개 이상일 경우 나머지 창은 고정형 창으로 설치됨 · 계단실 창은 고정형으로 설치되며, 환기를 위해 코아별로 창호사이즈를 고려하여 일부 오픈형(자동폐쇄장치 설치) 창호가 설치됨. 또한, 계단실 최상층에는 배연창이 설치됨 · 입면분할창 및 외부 마감재 설치 등으로 인해 세대 국기봉꼴이 설치위치가 동 출입구 전면 1개소에 설치됨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신발장 가구 내 선반의 배치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설치됨 · 세대 1~3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에 한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 식탁등은 인테리어 설계에 따라 식탁 배치 후 그 상부에 설치되며, 주택형별 조명기구 타입이 상이함(84D 펜던트) ·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 및 가전사/포털사/이통사의 제품 구매 후 활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인터넷 미 사용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제공기간은 변경 또는 미제공 될 수 있음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란 IoT 홈패드, IoT 도어락을 통한 방문자 영상통화/비밀번호 제공, 출입이력 조회 기능 및 가전사/포털사/이통사의 AI 스피커, App, 챗봇과 연계된 홈네트워크 연동 서비스) · 래미안 IoT 플랫폼 서비스는 성능 개선 또는 입주 시점의 기술 변화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쿡탑을 설치 되었으나, 전기용량 3.3kW 초과 전기쿡탑으로 교체 시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함 · 일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상가 등에 설치된 경관조명 또는 외부마감(커튼월록, 확장창 등) 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 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됨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일부 세대의 경우, 소방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소방 시설(차압 측정공)이 세대 현관문에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적용되며 일부 최하층, 펜트하우스 세대 욕실은 현장여건에 따라 층상배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일부 아파트 등에 항공장애등 및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조명 점등 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고, 이 경우 렌지후드 덕트커버에 자동식소화기용 전기차단기 점검구가 설치됨 · 주방에 설치되는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입주자가 관리해야할 개별 시설물로서 필터 등의 주기적인 교체로 인한 관리비용이 발생함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 등급은 특등급이며, 세대 내 무선 AP 가 설치되고 실별 인출구 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기준에 맞추어 설치됨
냉매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에어컨은 거실과 침실1에 기본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냉매배관이 아래와 같이 기본 제공 됨 - 침실2, 침실3 <p>*천장형 에어컨 전용 냉매배관으로 스탠드형 벽걸이형 실내기는 설치불가함</p>

■ 사업주체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4, 금정빌딩 703호

■ 문의 : 02-533-213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사무실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